

변경대비표

1. 대상약관: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 설정약관
2. 시행일 : 2017 년 4 월 21 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변경 대비표

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제10조(과세제외금액 확인)①~②(생략)	제10조(과세제외금액 확인)①~② (현행과 같음)	
<p>③ 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(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)의 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</p> <p>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	<p>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은 회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가입자가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1. ~2. (현행과 같음)</p>	<p>소득세법 시행령 §201의10</p> <p>③</p> <p>내용 반영</p>
(신설)	<부칙>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	